

# **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**

## **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**

제 1조 [ 목적 ]

제 2조 [ 용어의 정의 ]

## **제2관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**

제 3조 [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]

제 4조 [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또는 변경할 때의 구비서류 ]

제 5조 [ 보험금의 청구 ]

제 6조 [ 보험금의 지급절차 ]

## **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**

제 7조 [ 특약의 적용 ]

제 8조 [ 특약의 체결 및 효력 ]

## **제4관 보험료의 납입**

제 9조 [ 특약 보험료의 납입 ]

## **제5관 기타사항**

제10조 [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]

#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

##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

### 제 1조 [ 목적 ]

이 보험계약(이하 “계약”이라 합니다)은 보험계약자(이하 “계약자”라 합니다)와 보험회사(이하 “회사”라 합니다) 사이에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.

### 제 2조 [ 용어의 정의 ]

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,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.

- 계약자 :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.
- 보험수익자 :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.
- 보험증권 :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.
- 피보험자 :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.

## 제2관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

### 제 3조 [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]

① 계약자는 보험수익자에게 정신 또는 신경계의 장애로 영구히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스스로 올바른 의사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제출한 경우 등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 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명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(이하, “지정대리청구인”이라 합니다)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을 청구 할 때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.

- 보험수익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보험수익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
  - 보험수익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보험수익자의 3촌 이내의 친족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7조(특약의 적용)의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.

### 제 4조 [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또는 변경할 때의 구비서류 ]

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

회사는 지정 또는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.

1. 지정대리청구인 지정 또는 변경신청서(회사양식)
2. 보험증권
3.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등록부(기본증명서 등)
4. 신분증(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, 본인이 아닙니다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)

## 제 5조 [ 보험금의 청구 ]

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.

1. 청구서(회사양식)
2. 사고증명서
3. 신분증(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)
4. 보험수익자의 인감증명서
5. 보험수익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(가족관계증명서) 및 주민등록등본
6.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

## 제 6조 [ 보험금의 지급절차 ]

-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5조(보험금의 청구)에서 정한 구비서류 및 제7조(특약의 적용)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7조(특약의 적용)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(사망보험금 제외)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보험금을 보험수익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금(사망보험금 제외)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없습니다.
-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.

##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

### 제 7조 [ 특약의 적용 ]

이 특약은 계약자,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.

### 제 8조 [ 특약의 체결 및 효력 ]

- ① 이 특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부가되어집니다.
- ② 제7조(특약의 적용)의 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따라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는 효력이 없습니다.



## 용어해설

### [ 해지 ]

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.

## 제4관 보험료의 납입

### 제 9조 [ 특약 보험료의 납입 ]

이 특약의 보험료는 없습니다.

## 제5관 기타사항

### 제10조 [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]

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.